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19가합563952 판결 [설계용역계약금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1나20446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19가합563952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배장환, 손병기

피고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종석

변론 종결2021. 10. 6.

판결 선고2021.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8,944,1191) 원 및 그중 589,71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039,235,119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2016. 11. 10.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3. 4.경 (가칭)B아파트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2003. 12. 9. 서초구청장으로부터 B아파트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외 2필지에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동주택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1조[용역의 목적]

갑이 추진하고 있는 B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을은 경험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조기에 재건축사업이 목표에 도달하고 성공적으로 재건축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과 기타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용역으로, 재건축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대관청 인허가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의 수행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을이 수행할 설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건축에 따른 안전진단 대관업무

2. 교통영향평가업무 포함

3.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건축, 구조, 전기, 설비, 토목, 조경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일체)의
도서작성

4.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

5. 공사시방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

6. 재건축사업 시행의 설계에 대한 인허가관련 신청도서의 작성, 제출 및 이에 따른
대관업무(건축계획심의, 사업계획승인, 굴토 심의, 착공)

7. 단지조감도

8. 단지모형 제작(심의용 모형)

제5조[용역비의 지불방법]

① 갑이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용역비 총액 및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당단가: 27,500원 - 부가세 별도

2. 지불방법: 다음 표의 단계별로 설계 용역비를 지급한다.

계약금	20	시공사선정시
1차 중도금	10	건축계획심의 접수 시
2차 중도금	20	건축계획심의 완료 후
3차 중도금	15	사업승인 접수 시
4차 중도금	20	사업승인 완료 후
5차 중도금	10	실시설계도서 납품 후 착공신고 완료 시
잔금	5	준공 시
합계	100	

3. 갑은 을에서 대여된 조합운영비 및 조합 설립인가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이 발생할 때는 시공사 선정 시 조속히 정산하기로 한다.

② 본 설계 용역비는 최종 사업계획승인 시 건축연면적(지하부분 포함)으로 설계 용역비 약정 단가로
평당 27,500원을 부가세 별도 금액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3. 4.경부터 2011.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신청,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 이 사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 등과 관련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용역비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6,1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3.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경 설립되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다. 원고가 계약해지 통지를 받을 때까지 수행한 용역비는 합계 536,100,000원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모두 이행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은 2,863,735,573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연면적 225,490.99m² × 12,700원2))인 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남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될 비용은 합계 1,824,500,454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용역비 536,100,000원과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1,039,235,119원(= 2,863,735,573원 - 1,824,500,454원) 합계 1,628,944,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요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실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

설령 원고 주장의 용역비 채권 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3. 11. 20.경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원고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원고에게 재건축에 따른 안전진단 대관업무, 교통영향평가업무, 인허가 관련 신청도서의 작성, 제출 및 이에 따른 대관업무 등을 위탁하였다는 측면에서 위임계약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2) 용역비 지급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 피고의 2013. 11. 20.자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와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도급인은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기성고 등을 참작한 보수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하고(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84106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위임계약의 성격을 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계약이 2013. 11. 20.경 해지 또는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무렵 원고의 용역비 채권 및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 및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9.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용역비 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은 그 시효의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 시기를 '시공사 선정 시'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2017. 8. 27. 시공사를 선정하였는바, 원고의 채권은 피고가 시공사를 선정한 때 비로소 그 기한이 도래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서 계약금의 지급 시기를 '시공사 선정 시'로 정한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피고가 2017. 8. 27. 시공사를 선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비의 지급 시기는 계약의 구속력이 유지되는 전제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계약이 시공사 선정 전에 적법하게 해지 또는 해제된 이상 지급 시기에 관한 계약 조항만을 따로 들어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석재

판사강영기

판사이창현

별지

1) '1,628,945,119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피고가 2015. 5. 6. 주식회사 F와 체결한 건축설계용역계약에서 정한 단가이다.